## 거창군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 2011 ~ 57

제출연월일			2011. 8. 22.
제	출	자	거창군수

#### 1. 개정이유

○ 「농산물품질관리법」등에 규정되어있는 안전성이 확보된 우수한 식재료의 공급, 학교급식을 지원하기 위한 급식지원센터의 설치·운영, 무상 급식 등의 내용을 신설· 확대하여 전부개정 함으로써, 우리군 학교 급식의 질을 향상시키고 성장기 아동 및 청소년의 건전한 심신발달을 도모하고자 함

#### 2. 주요내용

- 가. 조례명을 "거창군 친환경 학교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"로 함
- 나.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를 구체적으로 명시함(안 제2조)
- "급식경비"를 「학교급식법」 제8조제4항에 따라 식품비 뿐만 아니라 급식운영비, 급식시설·설비비 등으로 확대 정의하고,
- "우수 식재료"를 「농산물품질관리법」 및 「친환경농업육성법」, 「축산물 가공처리법」, 「수산물품질관리법」등에서 규정한 친환경농산물 또는 품질인증품 등으로 구체적으로 명시함
- 다. 군수의 책무를 규정함(안 제3조)
- 군수는 학교급식비 지원, 지역 농산물 수급체계 구축, 급식지원센터 설비 확충 및 개선 지원, 친환경 무상급식 추진을 위한 재원조달을 할 수 있도록 명시함
- 라. 학교급식 지원대상을 규정함(안 제4조)
  - 급식지원 대상을 「학교급식법」,「유아교육법」,「영유아보육법」 에서 인정하는 학교 및 시설로 규정함

- 마. 학교급식 지원방법을 규정함(안 제5조)
- O 학교급식에 필요한 경비를 현물 또는 현금으로 지원하도록 함
- 바. 학교급식 지원신청 등을 규정함(안 제6조부터 제7조까지)
- 지원신청에 필요한 사항, 지원대상자의 의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
- 사.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 구성·운영 등을 규정함(안 제8조부터 제12조까지)
  -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자치단체장 소속하에 두는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를 구성·운영하도록 하고,
- 위원회는 15명 이내로 위촉하되, 학교급식 지원규모와 지원방안 등을 심의하도록 함
- 자. 급식지원센터의 설치 및 기능 등을 규정함(안 제13조)
- 우수 식재료의 원활한 생산과 물류, 공급관리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급식지원센터를 설치·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,
- 재배농가·생산자단체와의 재배계약 체결에 따른 생산계획 조정 및 품목선정을 하며,
- 급식지원센터 전부 또는 일부를 민간 기구에 위탁운영 할 수 있도록 함 차. 지도·감독 및 정보 공개 등을 규정함(안 제14조)
- 군수는 급식지원 내용에 따라 우수 식재료가 사용되고 있는지, 급식 시설 개선 등의 지원금이 목적대로 집행되고 있는 지 여부를 확인하는 등 지도·감독할 수 있고.
- 학교급식 지원현황 및 공급관련 정보를 군 홈페이지 등에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함
- 카. 시행규칙을 규정함(안 제15조)
  -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함

### 3. 참고사항

- 가. 관계 법령
  - ○「학교급식법」제2조, 제3조, 제4조, 제5조, 제8조, 제9조
  - ○「학교급식법 시행규칙」 제4조(별표2)
  - ○「농산물품질관리법」제5조
  - ○「축산물위생관리법」제9조 및 「축산법」제35조
  - ○「수산물품질관리법」제6조, 제9조
  - ○「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」 제11조
- 나. 예산조치 : 2011년도 예산확보(2억4천만원)
- 다. 합의: 기획감사실(법무통계담당)
- 라. 그 밖에
  - 1) 신구조문대비표 : 해당사항 없음
  - 2) 입법예고(2011. 6. 14.~7. 04.) 결과 : 특이사항 없음
  - 3) 규제심사 : 해당사항 없음

## 거창군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

거창군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# 거창군 친환경 학교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「학교급식법」제3조·제5조·제8조 및 제9조에 따라 품질이 우수하고 안전한 식재료를 공급하고, 무상급식을 실현할 수 있도록 필요한 급식경비를 지원함으로써 학교급식의 질을 향상시키고 학생의 건전한 심신 발달과 군민의 식생활 개선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- 1. "학교급식"이란 제1조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제4조의 급식지원 대상에게 실시하는 급식을 말한다.
- 2. "급식경비"란 학교급식을 위한 식품비, 급식운영비 및 급식시설·설비비 등 학교급식의 실시에 필요한 비용을 말한다.
- 4. "우수 식재료"란 학교급식을 목적으로 조리·가공하는데 사용되는 음식의 원재료로서, 환경·생태 친화적으로 생산·육성·가공과정을 거친 식품으로 공급과 유통이 투명하여 역순으로 추적이 가능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.
  - 가. 「농산물품질관리법」에 따른 우수관리인증농산물
  - 나. 「친환경농업육성법」에 따른 친환경농산물
  - 다. 「축산법」에 따른 일정등급 이상의 축산물로서「축산물위생관리법」에 따른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이 적용된 축산물
  - 라. 「수산물품질관리법」에 따른 품질인증품(원양산 포함)
  - 마. 「식품산업진흥법」에 따른 우수식품인증 식품
  - 바. 유전자 변형이 되었거나 이동거리가 상당하여 변질·변형된 농·수· 축산물을 원료로 사용하지 않은 가공품

- 사. 원료의 가공·유통과정 중 방부제, MSG(글루타민산나트륨) 등의 안전성이 확정되지 않은 첨가제를 사용하지 않고 트랜스지방이 없는 가공품
- 아. 그 밖에 「학교급식법 시행규칙」 제4조의 식재료 품질관리기준에 따른 식품
- 5. "무상급식"이란 급식경비 중 보호자(친권자, 후견인 그 밖에 법률에 따라 학생을 부양할 의무가 있는 자를 말한다)가 부담할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가·지방자치단체·교육지원청이 부담하는 것을 말한다.
- 제3조(군수의 책무) ① 군수는 제1조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내용을 충실히 이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  - 1. 학교급식의 실시에 필요한 급식경비의 지원
  - 2. 우수 식재료가 제공될 수 있도록 관내 생산자 및 생산자단체와 우선으로 협약을 체결하는 지역농산물 수급체계 구축 및 지원
  - 3. 우수 식재료의 사용을 통한 건강한 식생활 구현
  - 4. 건강한 식생활 발전을 위한 학교급식프로그램 운영방안 강구
  - 5. 거창군 학교급식지원센터(이하 "급식지원센터"라 한다)의 설비 확충 및 개선과 그 지원 및 운영·관리·감독
  - ② 군수는 거창교육지원청 교육장과 협의하여 다음 각 호의 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.
  - 1. 친환경무상급식 실현을 위한 종합적인 계획 수립 및 시행방안
  - 2. 친환경무상급식 추진을 위한 재원 조달 및 배분 방안
- 제4조(지원대상) 학교급식 지원대상은 군에 소재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학교 및 시설로 한다.
  - 1. 「학교급식법」제4조에 따른 급식대상 학교
  - 2. 「유아교육법」제7조에 따른 유치원
  - 3. 「영유아보육법」제10조에 따른 보육시설
  - 4.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교 및 시설

- 제5조(지원방법) ① 군수는 제3조에 따라 학교급식의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.
  - ② 군수는 급식지원센터를 통하여 지원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현물 또는 현금으로 지원한다.
  - 1. 현물로 지원하는 경우에 지역 생산자·생산자 단체와 직거래를 우선으로 하고, 안전한 식재료 공급체계를 마련하여야 하며, 그 밖에 농·수·축산물 및 가공품은 급식지원센터에 등록된 우수 식재료를 우선 지원한다.
  - 2. 현금으로 지원하는 경우에는 제3조제1항제2호 따라 생산자·생산자단체 및 학교와 협약을 통하여 생산된 지역 농수·축산물을 우선 사용 하여야 하며, 그 밖에 농·수·축산물 및 가공품은 급식지원센터에 등록된 우수 식재료를 우선 사용하여야 한다.
- 제6조(지원신청) ① 급식경비 및 우수 식재료를 지원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  - 1. 지원대상자의 명칭,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
  - 2. 급식시설 · 설비의 위치와 규모
  - 3. 해당학교 재적학생수 및 급식대상 학생수
  - 4. 급식경비 및 우수 식재료 총 소요 경비와 지원받으려는 금액
  - 5. 학교급식 운영계획
  - 6. 그 밖에 필요한 사항
  -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신청 사항을 종합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.
  - ③ 지원신청의 시기·절차·서식·공고방법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.
- 제7조(지원대상자의 의무) ① 급식경비 중 식품비를 교부받은 지원대상자는 지원금의 교부 결정내용에 따라 우수 식재료 구입에 사용하여야 한다.
  - ② 지원대상 학교 및 시설의 장은 지원금의 교부결정 내용에 따라 지원금을 집행하고 사용내역에 대하여 군수에게 정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.
  - ③ 지원대상 학교 및 시설의 장은 학교급식 지원과 관련하여 군수를 비롯한 위원회의 각종 자료제출 요구가 있을 경우 성실히 협조하여야 한다.

- 제8조(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)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거창군 학교급식심의위원회(이하 "위원회"라 한다)를 둔다.
  - 1. 급식지원센터의 설치·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
  - 2. 학교급식 지원대상 선정과 지원방법 및 지원규모 결정
  - 3. 급식재료 생산자 및 생산자단체와의 협약 등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사항
  - 4. 그 밖에 학교급식 지원 및 개선에 관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- 제9조(위원회의 구성 등)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
  -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,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.
  - ③ 위원회의 위원은 기획감사실장, 창조정책과장, 농촌활력과장, 보건소장을 당연직으로 하고,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내 기관 또는 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.
  - 1. 군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군의원 2명
  - 2. 거창교육지원청 1명
  - 3. 학부모단체 1명
  - 4. 교원단체 1명
  - 5. 농민단체 2명
  - 6. 학교 영양사 단체 1명
  - 7. 시민단체 1명
  - 8. 지역언론단체 1명
  - 9.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
  -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, 간사는 학교급식 업무 관련 담당주사가 된다.
  - ⑤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, 한 차례만 연임 할 수 있다.
  - ⑥ 군수는 위원이 사임의사가 있을 때, 정당한 사유 없이 회의에 참석하지 않거나 활동이 현저히 부진할 때,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.

- 제10조(위원회의 회의)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, 그 의장이 된다. ② 위원장이 회의를 개최하려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 일시·장소·안건 등 회의와 관련한 사항을 각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. 다만,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  -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,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- 제11조(소위원회) ①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위원회에 급식지원센터의 설치·운영, 생산자·생산자단체 협약 및학교급식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.
  - ② 소위원회의 설치·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.
- 제12조(수당 등)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「거창군 위원회 실비변상조례」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.
- 제13조(학교급식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) ① 군수는 「학교급식법」 제5조 제4항에 따라 학교급식에 지원되는 우수 식재료의 원활한 생산과 물류, 공급 관리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급식지원센터를 설치·운영할 수 있다.
  - ② 급식지원센터는 학교급식의 공공성과 공익적 기능을 추구하는 기구 로서,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.
  - 1. 재배농가·생산자단체와의 재배계약 체결에 따른 생산계획 조정 및 품목선정
  - 2. 유통 및 공급 관리, 물품 등록, 전산 수주 및 발주 관리
  - 3. 거창교육지원청 및 관련 유관 기관·단체 등과 연계한 교육·체험· 건강평가 및 홍보
  - 4. 위원회, 거창교육지원청, 지원대상 시설의 급식소위원회간 급식업무 협의
  - 5. 그 밖에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사항
  - ③ 군수는 급식지원센터를 운영할 경우 필요하면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

다음 각 호의 부대시설을 설치 · 운영할 수 있다.

- 1. 전처리, 포장 등 1차 가공시설
- 2. 친화경농산물 가공공장
- 3. 물류창고 및 차량기지
- 4. 생산단지 조성과 학교급식 체험프로그램을 위한 종합교육시설
- 5. 우수 식재료 생산 또는 학교급식 지원 컨설팅을 위한 연구소
- ④ 군수는 필요시 급식지원센터 업무와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비영리 법인·사회적기업 등의 민간 기구에 위탁운영 할 수 있다.
- ⑤ 급식지원센터의 운영을 위해 다음 각 호의 필요한 인력을 둘 수 있다.
- 1. 급식지원센터 운영의 총괄과 대외협력업무 추진을 위한 급식지원센터장
- 2. 교육·홍보, 생산·물류·유통, 전산재무 등 관리요원
- ⑥ 급식지원센터 운영에 관련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- 제14조(지도·감독 및 정보공개) ① 군수는 지원대상자와 급식지원센터 업무를 위임받은 자에 대하여 수시로 지도·점검을 할 수 있고, 부당 사례를 적발하였을 경우 지원 중단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.
  - ② 지원대상자가 제7조의 의무를 회피하거나 지원금을 지원 목적 이외에 사용한 경우 지원금의 교부결정을 변경 또는 취소할 수 있으며 이미 지급한 지원금을 회수할 수 있다.
  - ③ 군수는 군 홈페이지 등 홍보매체를 통하여 학교급식지원에 관한 사항을 공개하여야 한다.

제15조(시행규칙)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